

보도시점 : 2024. 2. 26.(월) 11:00 이후(2. 27.(화) 조간) / 배포 : 2024. 2. 26.(월)

## 「도심항공교통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

- 규제특례를 위한 실증·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
- 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이하 ‘도심항공교통법’)」(‘23.10.24. 공포, ’24.4.25. 시행) 제정에 따른 시행령·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(2.27.~4.8.) 한다.
- 「도심항공교통법」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, 이를 위해 실증·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  - 또한,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.
-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(110여개 기관 참여)를 통해 마련하였으며,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.
-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·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,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,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하였다.
    - 한편,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.
  - 실증·도심항공교통사업자(운송, 교통관리, 버티포트 운영·관리)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,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,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하였다.

- 또한,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**재무·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**(허가→시행계획 수립·인가→지정→준공)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**개발계획 및 설계도서** 등의 서류를 규정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최승욱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“**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** 예정으로,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**원활한 실증 및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**했다는데 의의가 있다”고 하면서,

○ “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**세부·기술적인 기준** 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, **속도감있게 제정해** 나가면서 법·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□ **제정안 전문**은 2월 27일부터 **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**의 “정책자료 - 법령정보 - 행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**의견을 제출**할 수 있다.

\* 주소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

담당 부서 <총괄>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승욱 (044-201-4197)
		담당자	서기관	서정석 (044-201-4302)
		담당자	주무관	신한나 (044-201-4280)
		담당자	주무관	손달현 (044-201-4198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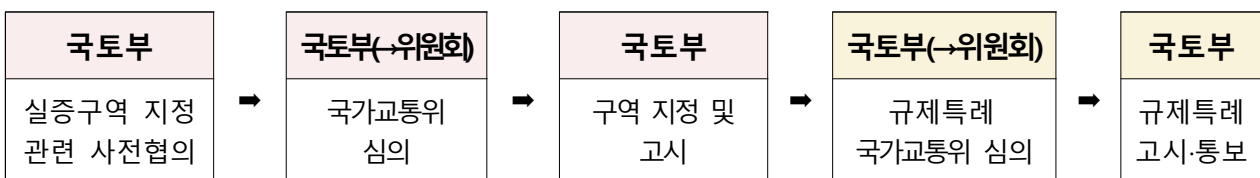
- ◆ 개념정립·규제특례·산업지원 등 입법취지와 타 입법례를 참고해,
  - ⇒ (시행령) 법률 위임 28개 등 포함 23개 조문, 4개 별표 제정
  - (시행규칙) 법률 위임 26개 등 포함 21개 조문, 5개 별표, 17개 별지 제정

**도심항공교통법 주요내용**

- (개념정의) UAM 항공기, 사업자, 버티포트, 회랑 등 구성요소의 개념 정의
- (규제특례) 기존 항공규제 해소,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운영체계 구축
  - 실증·시범구역 :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3차원 공간을 지정
  - 규제특례 : 안전·보안·시설·사업 등 현행 항공 4개 법률 적용 배제, 다만 필요최소한 안전규제는 적용(다만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)
- (사업 추진체계) 참여자인 실증·시범사업자 지정·관리, 인프라인 버티포트 개발 인허가 절차, 버티포트·회랑의 물리적 요건·기준 및 지정 절차 규정
- (생태계 조성) 기본계획, 행·재정적 지원, 국제협력, 인력양성·R&D 지원 등

- ① (정의·개념 구체화) 법률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버티포트 세부 구성시설, 시범운용구역 內 수행업무 및 도심항공기사용사업 범위 등 정립
- ② (기본계획 및 현황조사) 기본계획 포함내용 및 산업 현황조사 대상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, 계획 변경 및 조사 절차 등도 규정
- ③ (실증사업구역 및 실증사업자) 연구개발·실증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제한조건 및 지정 후 명칭·위치·범위 등 세부내용을 관보고시
  -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갖추어 장비·인력 기준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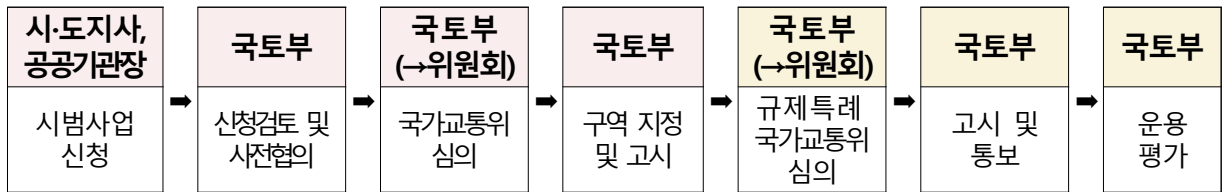
**【실증사업구역 지정·관리 절차】**



④ **(시범운용구역 및 UAM사업자)** 초기상용화 지역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제한·해제 조건과 국토부장관의 정기·수시 운용평가 절차 구체화

- 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, 사업자들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배상범위 규정

**【시범운용구역 지정·관리 절차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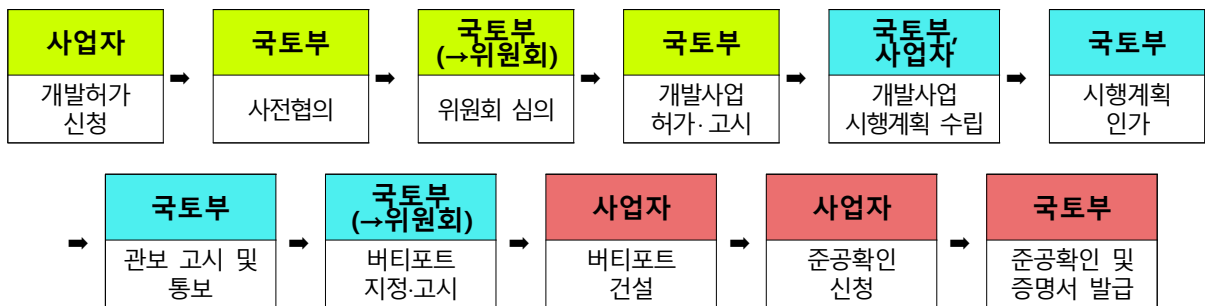


⑤ **(버티포트 및 회랑 지정·관리)** 버티포트 개발허가 시 요구되는 재무·기술능력과 ‘허가→시행계획 인가→준공 확인’의 세부 절차 규정

- 비행노선·공간인 회랑의 지정부터 지정 후 관보고시 절차 규정

※ 버티포트와 회랑의 구체적인 물리적·설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위임

**【버티포트 개발 절차】**



⑥ **(주요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**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과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의 구축·갱신·주체간 역할 등 규정

⑦ **(초기생태계 지원 및 조성)** 국·공유재산 특례 조건·절차를 마련하고, 연구개발,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대상기관 범위 등 구체화

⑧ **(보칙 및 벌칙)** 위임·위탁 대상 업무·기관과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